

종로구 무악동 공고 제2024 - 9호

무악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무악동자치회관운영세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u>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u>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별표〕 사용료 등(제4조관련)					〔별표〕 사용료 등(제4조관련)				
구분	면적 (강좌내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면적 (강좌내용)	단위	상한금액	비고
사용료	< 생략 >				사용료	< 생략 >			
수강료	취미강좌	< 생략 >			수강료	취미강좌	< 삭제 >		
	헬스	< 생략 >				헬스	< 생략 >		
	원어민영어 (외국어)교실	< 생략 >				원어민영어 (외국어)교실	< 삭제 >		
	키가쑥쑥 어린이요가	< 생략 >				키가쑥쑥 어린이요가	< 삭제 >		
	어린이공부방	< 생략 >				어린이공부방	< 삭제 >		
	< 신설 >					기타 프로그램	월	50,000원	
리커 사용료	헬스 등	분기	10,000원	월 3,500원	리커 사용료	헬스 등	< 생략 >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헬스수강생에 한하여 수전1매를 제공하고 사용 후 반납한다.					※ < 삭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따라 개정하고,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변경

폐장된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무악동자치회관운영세칙

제	정	2001. 1. 11.
제	정	2005. 2. 18.
제	정	2005. 10. 1.
전면개정		2007. 5. 17.
제	정	2007. 6. 21.
제	정	2010. 2. 18.
제	정	2018. 1. 10.
제	정	2022. 4. 7.
제	정	2023. 1. 12.
제	정	2024. 3. 1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이하“센터”라 한다) 관리·운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명칭은 무악동자치회관로 하며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은 무악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①센터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 이상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매분기 말월(3, 6, 9, 12)에 한다.

2. 수시신청 및 접수는 제1호 이외의 기간에 월단위로 접수한다.

3.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순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주민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수강료를 징수후 수강증을 발급하고,수강신청자 및 수강료징수 현황을 접수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②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6. 21.>

④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도 운영 계좌에 익일 오전까지 입금하고 관리한다.

⑤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중 10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자치회관운영
요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자치회관 시설 유지비 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⑥동장 및 위원회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
자를 회계 개시년도 90일전까지 지정한다.

제4조의 1(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환불) ①사용료 반환은 시설·장비 사용
전에는 전액환불하고 사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수강료 등 환불은 당해 프로그램 개시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잔여기간이 수강신청 전체의 1/2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
우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 등) 동장은 자치센터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등이 신체상의 피
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
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등) ①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 금액
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강사 수당은 1시간당 2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
으로하며, 15명 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프로그램 신
규개설이나 강사교체 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각 센터별 실정에 맞게 강
사수당을 수입금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 간 쌍방계약에 의하여
강사수당을 결정 지급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등의 자원봉사자에게 1일당 10,000
원의 봉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사 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경우는
5,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3. 12.>

1. 운영분과 위원회 임무

가. 시설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취미교실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지원, 강사선정, 프로그램홍보

다. 자료조사, 각종 프로그램모니터링

라.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각종행사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분과 위원회 임무

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주민참여 유도

나.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

다. 생활정보제공, 도서정리,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업

라. 타 분과위원회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3. 복지분과 위원회 임무

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나. 자원봉사모집 및 지원

다. 청소, 교통질서, 환경분야 등의 지역봉사활동

라. 삭제 <2022. 4. 7.>

마. 농산물 직거래 활동, 알뜰시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분과 위원회 임무 <신설 2022.4.7.>

가.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나.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업무 관장

다. 아동·청소년 행사 선정 및 지원

라. 아동·청소년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거나 투표로 선출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공개 등) 다음 각호의 공개사항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공개한다.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신규 위촉 포함)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9조(월례회의) 월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시는 그 익일로 한다. <개정 2023. 1. 12.>

제10조(위원회비) 주민자치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비를 수납하여 위원회 경비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목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1. 1. 1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7)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2007. 7. 2부터 한다.

부 칙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7)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3.)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 (제4조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면 적(강좌내용)	단 위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50㎡미만	1시간	10,000원	○ 부대시설포함 부대시설포함 - 식당 : 41㎡ - 1강의실 : 45㎡ - 2강의실 : 45㎡ - 헬스장 : 370.37㎡ - 강당 : 354.39㎡ ○ 청소는 시용자부담 원칙
	50㎡이상~ 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헬스	분기	85,000원	월30,000원
		반기	170,000원	
		년	330,000원	
	기타 프로그램	월	50,000원	
라커 사용료	헬스 등	분기	10,000원	월 3,500원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삭제 <2024. 3. 13.>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및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시설이용	